



위촉장

류 정 수

귀하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
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
시민감사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.

2015년 6월 1일

서대문구청장 문 석 진